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 북 구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60
----------	-----

제출년월 : 2026년 2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관내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구청 간 논의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정기적 안전 논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성북구 아파트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북구 아파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문화 확산 및 주민 참여 증진,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제도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가 상생하는 주거문화를 조성하고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협의회는 현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 대표) 중에서 행정동별 대표로 구성하되, 동별 아파트 세대수의 편차를 고려하여 세대수에 따라 동별 대표의 정원을 1명 증원할 수 있게 하여 각 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함.

또한, 필요 시 아파트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게 하여 협의회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권역별 대표가 1년씩 순환하여 맡도록 하여 특정 지역의 이해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상황을 방지함. 또한, 권역 구분은 인접한 행정동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분포와 세대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 간 동별 대표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설정함으로써, 구 전역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협의회가 각 아파트 입주민·동·권역을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 및 임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별 대표·권역 대표 등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되는 것으로 규정함. 또한, 회의 불참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안 제5조)

마. 임원의 직무를 구체화하고,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두어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안 제6조 및 제7조)

바. 협의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를 소

집할 수 있도록 하며, 시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사.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 행위중지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민간 중심의 협의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확보함.(안 제9조 및 제10조)

아.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 운영 사항은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2026년 세출예산 행사실비지원금 1,080천원 증액 편성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5.12.26 ~ 2026.1.15.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있음

구분	의견	반영 여부	검토내용
입법예고	○ 성북구 내에 여러 공동주택 관련 연합회 및 협의회 등이 설립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음	미반영	○ 아파트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안건을 논의하고 구청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서 자생적인 민간 단체와 목적과 기능을 달리함

- 3)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5)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
 -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 아동영향평가 결과 : 대상아님

구분	권고내용	반영 여부	검토내용
인권 영향 평가	○ 구민의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제2조에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추가한다면 단순히 특정 계층의 편의 증진을 넘어, 구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미반영	○ 제2조제5호 “그 밖에 협의회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활동”에 포함되는 기능이라 판단됨
부패 영향 평가	○ 협의회 회원·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중 연임 차수 제한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공정하게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반영	○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4,6항에 ‘한 차례만’ 문구를 추가하여 한 차례 연임으로 횟수를 제한함
	○ 협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정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반영	○ 제8조에 ‘④ 간사(또는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를 추가함
	○ 협의회 회원·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미반영	○ 아파트 협의회 구성 목적과 기능상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판단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4조에 따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차단됨
성별 영향 평가	○ 성별균형 참여사항을 반영하여 제3조제3항의 아파트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반영	○ 제3조제3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문구를 추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상생하는 주거문화를 조성하며,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구정에 적극 협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문화 확산 및 주민 참여 증진
2. 단지 내 재해예방 및 재난대응 활동 참여
3.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 교육 및 홍보
4.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
5. 그 밖에 협의회가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 활동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현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의 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 대표)(이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한다) 중에서 행정동별 대표(이하 “동별 대표”라 한다)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동별 아파트 세대수를 고려하여 동별 대표의 정원을 1명 증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 시 성별을 고려하여 5인 이내로 아파트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④ 동별 대표 및 전문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원의 구성 및 선정 등) ① 협의회 임원은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권역순으로 권역 대표 중 1명이 수행하며, 권역순서는 1권역(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1동, 안암동, 보문동), 2권역(돈암2동, 정릉1·2·3·4동), 3권역(길음1·2동, 중암동), 4권역(월곡1·2동, 장위1·2·3동, 석관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권역 대표는 해당 권역에 속하는 동별 대표들이 선출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선출 과정을 거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부회장은 권역 대표 중에서 정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선출 과정을 거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원 및 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및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동별 대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권역대표 및 감사가 동별 대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회장 및 부회장이 권역 대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5. 회원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6. 정기 및 수시회의에 3회 이상 불참 등 협의회 활동을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경우
7. 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유발 등 품위손상으로 회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원 및 임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의 공동주택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구의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3, 6, 9, 12월)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단, 정기회의 개최 월의 변경은 회원의 과반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간사(또는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주요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요구, 행위중지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11조(세부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장 김나정